

모자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한 단기체류형 공동주거시설 개발 기초연구

- 서울시 소재 모자보호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hort-term residential facilities for single mother family

- Focused on relief and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mother and child in Seoul -

양수련* / Yang, Soo-Ryun
강미선** / Kang, Mi-Seon

Abstract

In according to the rising rate of divorce, single parent family has increased rapidly. And the number of single mother families is up to 80% of total single parent families. Especially the residential problem of low-income single mother families has been issue in social scope. But now facilities to accept these families are too short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ims for basic analysis of short-term residential facilities for single mother family. The survey of written documents and investigation of existing facilities are used by the method of study. In addition relief and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mother and child in Seoul is analyzed by domestic example because of similarity to the model of this study.

키워드 : 편부모, 모자시설, 단기체류형, 공동주택, 복지시설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우리나라 편부모 가구수는 2000년 현재 112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9.4%를 차지한다.¹⁾ 이는 1990년 89만가구, 1995년 95만가구에 비해 급속히 증가한 수치다. 이혼율의 증가로 인하여 편부모 가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가정 중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문제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편부모 가정이 된 초기에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복지적 차원의 지원시설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국적으로 모자보호시설 40여 곳에 불과하다. 또한 사회복지 선진국에 다수 존재하는 자립지원형 공동주거시설은 국내에 전례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편부모 가정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하여 2~3년간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공동주거시설 모형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자 한다.

그 중 이번 연구는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향후 공동주거시설 개발의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모자가정(모+자녀1~3명) 20~40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거시설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현조사 및 기존사례조사 방법을 이용할 것이며, 문현조사는 건축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정학, 사회복지학 등의 인문적인 내용 검토를 포함한다. 사례조사는 동분야에서 개별주거와 복지시설이 접목되어 있는 유일한 모델인 모자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사례조사 방법으로는 심층면접(open-ended interviews), 직접관찰(direct observation), 문서활용(written documents)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양적인 사례가 정량적 조사를 할 만큼 수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거주자의 특성상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고려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기관방문 및 담당자 인터뷰, 모자보호시설의 관계자 및 거주자 인터뷰, 사진촬영, 도면검토, 법적 기준의 적정성 검토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2. 모자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운영프로그램 검토

2.1 모자시설에 대한 개념 및 운영 프로그램

1)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정희원,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 정희원,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현재 편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시설로는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 보호시설이 지정되어 있다. 이들 시설은 주거공간을 제공하며, 체류기간과 주거공간 구획에 따라 <표1>과 같이 구분된다. 시설의 설립은 개인 법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운영비, 인건비, 기능보강비, 거주자 생활비 등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즉, 설립은 사단 법인에 의해, 운영은 국가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4종류의 시설 중 모자가정 20~40세대가 2~3년간 거주하는 단기체류형 공동주거시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가장 유사한 '모자보호시설'을 본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표 1> '03년도 모자복지시설 현황 및 종류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시설수	40	4	14	10
대상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성인)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성인)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보호를 요하는 여성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보호를 요하는 여성
보호 기간	3년(+2년 연장 가능)	3년(+2년 연장 가능)	2개월(+2월연장 가능)	6개월(+6월 연장 가능)
입소 정원	931명	167명	321명	377명

모자보호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은 1. 가정복지사업(자립지원 상담, 가족예배, 어머니 월례회, 송년행사), 2. 정서교육사업(생일파티, 요리실습, 집단활동, 행사, 시상식), 3. 교육사업(학습지도, 컴퓨터 교실, 우리두리 공부방, 글짓기 교실, 미술, 영어 교실, 피아노 교실, 체육교실), 4. 보건위생사업(신체검사, 이미용 서비스, 예방접종), 5. 기타사업(문집발간, 법률상담, 실습생지도)등이 있다.

2.2. 모자보호시설의 물리적 특징

모자보호시설의 법적 기준은 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제 10 조 제1항 [별표2]와 관련하여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설립시 법적 기준이나 강요도는 약한 편이며, 구체적인 시설기준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 설립은 거의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 모자보호시설은 크게 대문 및 옥외공간, 경비구역, 사무공간, 공용공간, 주거공간으로 구획될 수 있다. 이 시설은 주거공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임대주택이나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매입 프로젝트 등과 유사하나 공용공간과 사무공간에서 거주자의 통제 및 운영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주거단위의 연구뿐만 아니라 옥외공간, 공용공간, 사무공간 등 특수한 공간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표 2> 모자보호시설의 시설기준

입지조건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함
시설최소면적	44㎡×입소정원세대
시설의 규모	상시 20세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설비시설	가. 거실(부엌을 포함하여 적당한 난방, 통풍, 일조량 확보하고, 출입구는 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한다. (실제 면적은 세대당 27.65㎡이상이어야 함) 나. 사무실 다. 상담실 라. 도서실 또는 오락실 (열람좌석수가 10석이상이어야 함) 마. 화장실 바. 경비실·창고 등 부속시설 사. 급수 및 배수시설 아. 소화설비
비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3. 모자보호시설의 현황 및 사용성 검토

3.1. 모자보호시설의 현황조사(직접관찰)

모자보호시설 40여 곳은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 그 중 서울시 소재 모자원 6곳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D, S, P 모자보호시설 3곳은 직접 관찰하였다. 모자보호시설은 대체로 <표 3>에서 분류한 것처럼 옥외공간, 경비구역, 사무공간, 공용공간, 주거공간, 복도 및 통로로 공간을 나눌 수 있다. 옥외공간은 울타리,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나 어머니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단, S모자원의 경우 옥상공원을 조성하여 파라솔과 의자를 설치했다. 경비구역은 사실상 따로 없으며 사무실에 경비창을 두어 출입을 통제한다. 사무공간은 사무실, 상담실 등이 있고 5명의 직원이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2교대 시 오후1시부터 8~9시까지) 상주한다. 공용공간 중 도서실, 공부방(컴퓨터실)은 주로 아동들이 낮 시간에 이용하고 강당, 예배실은 간헐적으로, 주로 저녁시간에 이용한다. 특히 강당 등의 대형공간은 유통성이 있게 활용되고 있었다. 주거공간은 방 1개가 분리되어 있는 형식으로 취사와 침실이 구분되어 있는 정도이며 면적이 비교적 넓은 모자보호시설은 욕실과 세탁공간이 개별주거공간에 포함되어 있으나 면적이 좁은 시설은 공동욕실과 공동세탁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2)2003년도 10월 '모자복지법'에서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표 3> 현 모자보호시설의 공간 분류

	분류	D모자원	S모자원	P모자원
옥외 공간	놀이터	○	x	x
	주차장	○	○	○
	벤치	○	x	x
	울타리	○	○	x
경비 구역	경비실	x	x	x
	대문	○	○	○
사무 공간	사무실	○	○	○
	상담실	○	○	○
	집단상담실	○	○	○
	원장실	○	x	x
공용 공간	공동세탁장	x개별세대	○	x개별세대
	공용샤워실	x개별세대	○	x개별세대
	공용테라스	x개별세대	○	x개별세대
	용접실	x	x	○1층에 위치
	도서실	○컴퓨터실겸용	○컴퓨터실겸용	○컴퓨터실겸용
	공부방	○	○	○
	놀이방	x어린이집 이용	○	○
	강당	○	○	○
	예배실	○지하에 위치	○	○
	방	○	○	○
주거 공간	거실·부엌	○	○	○
	화장실	○	x	○
	테라스	○	x공용테라스	○
	원장사택	○	○	x
복도 및 통로	복도형식	○중복도식	○중복도식	○중복도식
	비상계단	○	x완강기설비	x
	사무실작동	○경비창	x	○경비창

○: 있다 x:없다

3.2. 공간의 사용성 검토(심층인터뷰)

사용성 검토는 전현직 상주직원(D, S, P시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학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서울시 보육지원과), 거주자 등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질문은 옥외공간, 경비구역, 사무공간, 공용공간, 주거공간, 복도 및 통로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1) 옥외공간: 서울시 소재 모자보호시설의 경우 대부분 옥외공간이 부족한 설정이며 거주자들의 녹지공간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녹지공간과 더불어 벤치나 평상과 같이 모여 앉을 수 있는 장소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2) 경비구역: D, S, P시설 모두 경비실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사무실의 경비창으로 경비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단 D시설의 경우 대문-주차장-어린이집-사무실(경비구역)-계단-복도-개별세대-비상계단의 순서로 구획되어 비교적 통제가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거주자들이 특히 우려하는 점은 외부인의 출입³⁾, 외부공간과의 구획문제 등이다.

(3) 사무공간: 직원 상주시간이 길고 이용도가 높은 사무실은 고정 요소가 많고 설비면에서도 전산화되어 있지만 상담실의 경우 거주자 설문 결과 한 달에 1번 이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러 용도로 융통성 있는 사용을 하고 있었다.

3)모자보호시설에는 폭력 및 그 밖의 가정불화로 이혼한 모가 많으며 이들의 전남편이 출입하여 2차적인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4) 공용공간: 관계자 인터뷰에서는 월례회, 강연회, 각종 세미나 등에 강당을 사용한다고 했으나 거주자 인터뷰를 통해 강당이 별도로 없는 시설도 많이 발견되었다. 도서실의 경우 아이들은 방과 후 매일 이용하며 어미니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용옹접실에 대한 대답은 '필요하다'와 '집에서 맞으면 되니 필요없다'가 비슷한 비율이었다. 또 시설 내에 무료탁아시설이 있다면 이용하겠지만 보육료를 부담해야 할 경우 5만원 이하정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5) 주거공간: 관계자, 거주자 모두 원룸형식의 공간을 원치 않았고 거주자 설문시 2인 가족일 경우 10~12평, 3인 가족일 경우 12~15평이 적절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또 같은 평수일 때, 작은 방이라도 2개 이상이 구획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공부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면적이 좁은 S시설의 경우 세탁공간, 욕실이 공용공간화되어 있지만 거주자들은 위생과 사용시간대의 문제로 개인 세탁기 사용을 원했다. 테라스는 면적이 좁으며 빨래를 말리거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6) 복도 및 통로: 거주단위의 배치는 중복도형이 많은데 생활 침해와 통풍 문제로 거주자들은 이를 기피하고 있다. 복도 및 통로는 한 방향으로 진행되며 동선의 끝에 피난계단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림 1> 현황 사진자료

4. 모자가정 단기체류형 공동주거시설 개발을 위한 물리적 요소 검토

4.1 기존 모자시설의 개선점 및 법적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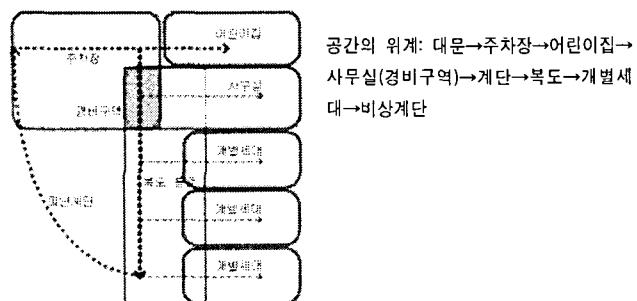
위 <표 2>에 근거하여 법적 적정성을 고려하면, 최소면적기준($44m^2 \times$ 입소정원세대)은 3년 후 자립하여 임대주택 등으로 이사할 경우의 주거 면적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보여진다. 사무실, 상담실, 소화설비 등의 기준도 대체로 적합

하다. 그러나 시설 특성상 경비구역, 동선계획 등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나 제시가 없다. 실제로 울타리가 없는 곳도 있고 1층이나 지하층을 상업시설로 임대하는 주상복합식도 있었다. 또 급변하는 추세에 맞추어 도서실 열람 좌석수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컴퓨터 설비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심지의 경우 중복도형이 많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통풍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단위가 결합하는 형태나 통풍 계획에 대한 지침도 필요하다.

4.2. 모자시설의 물리적 요소 분석 및 계획방안

(1) 배치 및 동선 계획

공간은 그 위치와 접근성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경비구역과 공용공간, 피난동선 등의 구획에 유의하여야 한다. 동선은 한 방향으로 진행시키되 비상시 피난할 수 있는 통로를 개별세대에 인접시켜야 한다. 특히 경비구역은 사무실과 인접해야 하며 개별세대로 통하는 계단이나 복도에 경비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동선 디아어그램>

(2) 거주단위 계획

거주단위의 면적은 2인 가족일 경우 10평~12평정도, 3인 가족일 경우 12평~15평정도가 적정하다. 또 화장실, 욕실, 부엌은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경향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세탁은 개별세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되 소규모 공동세탁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중복도형일 경우 통풍 및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나 불가피할 경우 통풍계획 및 사생활 보호 계획이 별도로 필요하다.

(3)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 계획

사무실은 주통로와 접하는 곳에 배치하며 경비창을 통해 거주자 및 외부인이 잘 보여야 한다. 내부에서는 외부가 잘 보여야 하고 외부에서는 내부에서 수행되는 임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공용공간은 이용시간대에 따라 낮시간 이용(공부방, 컴퓨터실, 놀이방, 응접실 등), 저녁시간 이용(체육실, 강당, 예배실)을 구분하여 적절히 계획되어야 한다. 대형공간(강당, 예

배실)은 융통적인 활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트인 공간을 연출하여 바닥난방을 하는 것이 좋다.

(4) 옥외공간 계획

차도와 접해 있을 경우 울타리 등으로 경계를 확실히 하여 교통사고 및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 대문에서부터 사무실까지는 경비구역으로 철저히 계획하여 외부인과 어린이들의 통제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옥외공간 중 어린이와 어머니를 위한 놀이공간을 조성해야 하는데 놀이터, 벤자, 평상, 파라솔 세트, 정자형식의 지붕이 있는 시설물, 녹지공간 등을 설치한다. 또한 주차장은 어린이 놀이터와 분리 배치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문현조사, 시설기준 검토, 기존사례 조사를 통해 모자가정 자립지원을 위한 공동주거시설을 분석하고 설계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모자가정을 위한 공동주거에 대한 연구의 전례가 적은 관계로 문현 연구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유사 시설의 직접 관찰과 거주자 및 관계자 등 당사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대외적인 자료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소소한 사용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향후 모자가정 자립지원을 위한 단기체류형 공동주거시설의 모델 개발에 실질적인 근거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다변하는 가정형태에 대응하는 주거형태 구축, 직장 여성의 육아문제를 지원하는 시설의 정비, 국가적 차원의 복지 시설 수준 향상을 위한 수행과제들의 실질적인 근거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1. 모자보호시설 입소모자가정의 가족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김양호·박정희·유계숙·전춘애, 대한가정학회지 제 40권 3호, 2002
3. 이혼자녀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유관기관 활성화 방안, LG Global Challenger, 영국탐방문, 2002. 7. 14 - 2002. 7. 27
4. 모자보호시설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김양호·박정희·유계숙·전춘애, 대한가정학회지 제 40권 6호, 2002
5. 2004년도 모·부자복지사업안내